
제96차 대학평의원회 서면심의 회의자료

2023. 11. 16.(목)



울산과학대학교
ULSAN COLLEGE

A-101 울산과학대학교 학칙 개정안(1)

1. 개정 이유

- 가. 산업체위탁교육과정, 계약학과과정, 졸업학점 변경하여 달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나. 일반과정 중 성인학습자과정의 졸업학점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다. 신규 인가받은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추가
- 라.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위의 종류 재정비 및 신규 인가 학과 추가

2. 주요내용

- 가. 학칙 제37조(졸업 및 수료) 제1항 제6호에 산업체위탁교육과정, 계약학과과정, 성인학습자과정의 졸업 및 수료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(신설)
- 나.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표에 신규 인가받은 인공지능기반텔레헬스학과 추가
- 다.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위의 종류 학과별 재정비

3. 신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4. 관련근거,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

- 가. 관련되는 근거: 「고등교육법」 제50조(학위의 수여) 제1항에 따라 「학칙」으로 정하도록 위임함
- 나. 관련부서 협의: 입학팀, 기획팀
- 다. 관련 위원회 심의: 위탁교육심의위원회(2023. 8. 22.)
- 라.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: 검토 완료
- 마. 설명자료(사전 보고자료): 전체교수회의(2023. 8. 25.)

UCS-A-10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
제37조(졸업 및 수료) ① 졸업(학위수여)에 필 요한 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고, 소정의 교양 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사 항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8. 12. 1., 2022. 12. 1.> 1. ~ 5. (생략) <신설>	제37조(졸업 및 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, 산업체위탁 교육과정, 계약학과과정, 일반과정 중 성인학 습자과정은 달리 정할 수 있다.	학과신설 에 따른 졸업 및 수료학점 반영 및 산업체위 탁교육 및 계약학과 졸업학점 변경																		
[별표 5-1]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<table> <tr> <th>학과</th> <th>수업연한</th> <th>입학정원</th> </tr> <tr> <td>미래모빌리티제조학과</td> <td>2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<신설></td> <td><신설></td> <td><신설></td> </tr> </table>	학과	수업연한	입학정원	미래모빌리티제조학과	2	10	<신설>	<신설>	<신설>	[별표 5-1]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<table> <tr> <th>학과</th> <th>수업연한</th> <th>입학정원</th> </tr> <tr> <td>미래모빌리티제조학과</td> <td>2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인공지능기반텔레헬스학과</td> <td>2</td> <td>5</td> </tr> </table>	학과	수업연한	입학정원	미래모빌리티제조학과	2	10	인공지능기반텔레헬스학과	2	5	학과 신설
학과	수업연한	입학정원																		
미래모빌리티제조학과	2	10																		
<신설>	<신설>	<신설>																		
학과	수업연한	입학정원																		
미래모빌리티제조학과	2	10																		
인공지능기반텔레헬스학과	2	5																		
[별표 5-2]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위의 종류 <table> <tr> <th>학위명</th> <th>종류</th> <th>학과</th> </tr> <tr> <td>석사</td> <td>전문기술석사</td> <td>미래모빌리티제조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신설></td> <td><신설></td> </tr> </table>	학위명	종류	학과	석사	전문기술석사	미래모빌리티제조		<신설>	<신설>	[별표 5-2]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위의 종류 <table> <tr> <th>종별</th> <th>학과</th> </tr> <tr> <td>공학전문기술석사</td> <td>미래모빌리티제조학과</td> </tr> <tr> <td>치료공학전문기술석사</td> <td>인공지능기반텔레헬스학과</td> </tr> </table>	종별	학과	공학전문기술석사	미래모빌리티제조학과	치료공학전문기술석사	인공지능기반텔레헬스학과	학위종류 조정 및 학과 신설			
학위명	종류	학과																		
석사	전문기술석사	미래모빌리티제조																		
	<신설>	<신설>																		
종별	학과																			
공학전문기술석사	미래모빌리티제조학과																			
치료공학전문기술석사	인공지능기반텔레헬스학과																			
<신설>	부칙 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																			

A-10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칙 개정안(2)

1. 개정이유

- 가.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「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(지방 전문대학 활성화)」 협약에 의거 「지방전문대학활성화사업단」 신설
- 나. 국제교류·어학교육원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부서명 변경

2. 주요내용

- 가. 제69조 중 “지방전문대학활성화사업단” 신설
- 나. 제69조 중 “국제교류·어학교육원장”을 “국제교류원장”으로 함

3. 신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4. 관련근거,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

- 가. 관련되는 근거
 - 1)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(‘22~’24) 협약서(지방 전문대학 활성화)(2023. 7. 1.)
 - 2) 「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운영규정(UCS-F-103)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: 산학협력단-기획처, 국제교류·어학교육원-기획처
- 다. 관련 위원회 심의: 해당없음

UCS-A-10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제69조(부속기관 및 부설기관, 부설연구소)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, 부설연구소를 두며,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<개 정> (2011. 12. 1) ① 부속기관 예비군대대, 대학언론부, 장애학생지원센터, <u>국제교류·어학교육원</u>, 학생생활관, LINC3.0사업단, 영유아보육지원센터, 직업교육혁신원, 학술정보원. 신산업분야특화선도전문대학지원사업단, 지역혁신플랫폼고숙련인재양성사업단, 인권센터, IR센터,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,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단, 기술사관육성사업단, 마이스터대지원사업단,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사업단, 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단, 차세대통신혁신융합대학사업단, <신설> 1. 학술정보원 도서관 관련 사항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며 도서관운영위원회, 예산, 조직, 자료의 수집 및 관리,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, 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서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② 부설기관 (생략)	제69조(부속기관 및 부설기관, 부설연구소)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, 부설연구소를 두며,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<개 정> (2011. 12. 1) ① 부속기관 예비군대대, 대학언론부, 장애학생지원센터, <u>국제교류원</u>, 학생생활관, LINC3.0사업단, 영유아보육지원센터, 직업교육혁신원, 학술정보원. 신산업분야특화선도전문대학지원사업단, 지역혁신플랫폼고숙련인재양성사업단, 인권센터, IR센터,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,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단, 기술사관육성사업단, 마이스터대지원사업단,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사업단, 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단, 차세대통신혁신융합대학사업단, <u>지방전문대학활성화사업단</u> 1. 학술정보원 도서관 관련 사항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며 도서관운영위원회, 예산, 조직, 자료의 수집 및 관리,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, 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서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② 부설기관 (현행과 같음)	
<신설>	<u>부칙</u> <u>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	